

●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99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11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50조의4(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장○희 등 3명(법인포함)
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6.9.11. ~ 2026.9.25.(공고일로부터 14일)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,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26 /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oasis79@korea.kr)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 (법인번호)	고지주소	법 령	과태료 (만원)	스팸번호	광고
1	장○희	1992.○.04	인천 미추홀구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, 제4항	600	010-****-4264	중고차 매매
2	더○○○○즈	110111- 87○○○58	서울 동대문구	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6항	300	010-****-1633	보험, 상조 등
3	주식회사 마○○신	110111- 89○○○27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	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	600	-	-